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85 발의연월일: 2023. 6. 5.

발 의 자 : 신현영・이수진(비)・이해식

윤건영 • 이성만 • 이용우

김승남 · 최종윤 · 강민정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재난 피해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난 당시의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의 치료와 간병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그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에 이 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피해자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 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피해자의 재난으로 인한 신 체적 ·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

	용 지원
<u>9.</u> (생 략)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